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8. 4. .
제 출 자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의 실현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추가하여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 개정(안 제17조)
- 신시가지 공용시설보호지구내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부부 직장인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허용을 위한 보완 개정(안 제51조)
- 최고고도지구는 해제 후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관리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보완 개정(안 제58조의2)
- 도시정비촉진을 위하여 일반, 근린상업지역등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립 시 공동주택 부분이 70% 이하를 90% 이하로 조정 및 그에 따른 용적률 등을 준주거지역 수준(500%)으로 하향조정(안 제64조, 별표 8 및 별표 9)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 이내로 하되, 건폐율은 90%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적용을 위한 보완 개정(안 제67조의2)

- 국가청렴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대한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개정(안 제69조 및 제71조)
- 공동주택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 보완 개정(안 제75조의2)
 - 공동주택 건설 민간사업자 요청 시 의견청취
 - 주요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 내용 그 결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15만㎡ 이하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시장·군수에 위임)에 따른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보완 개정(안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4까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체육시설, 세차장 등 설치 허용(별표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洞) 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첨단 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으로 조례 보완 개정(별표 15)
-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립주택, 수리점, 주유소 등 설치 허용(별표 19)
- 농림지역 내에서 수련시설 모두 허용(별표 20)
- 기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사항 개정(안 제17조 및 제66조,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3.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구미시도시계획조례」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도시계획조례”를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내의 주택”으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지역

제51조제11호 중 “노유자시설”을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 등 경관의 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

제6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단,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단,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단,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62조”를 각각 “제64조”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중 “13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제4항 중 “이상이어야 한다”를 “이상이어야 하며, 구미시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 위원회 이하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중 “의원3인”을 “의원3명(소관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5항 중 “하되”를 “하고, 3회까지”로 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제81조의2(공동위원회의 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채·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

제81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하
3. 제72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포함한다.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별표 7 제1호 중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9 제1호 중 “70퍼센트”를 각각 “90퍼센트”로 하고, “숙박시설”을 각각 “일반숙박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2호마목 중 “가공공장”을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가목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를 “아파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다목 중 “나목”을 “나목 및 사목”으로 하며, 동호마목 중 “다목”을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동호타목을 파목으로, 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69조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u>구미시도시계획조례</u>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생략)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외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 7. (생략) <u><신설></u> 제51조 (생략) 1. ~ 10. (생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u>노유자시설</u> <u><신설></u>	<u>구미시 도시계획 조례</u>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현행과 같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내의 주택----- 2. ~ 7. (현행과 같음) 8.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역 제51조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u>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을 제외한다)</u> 제58조의2(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 등 경관의 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	• 제명 띄어쓰기 • 근거법령 수정 • 부부직장인의 편의제공

	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단,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단,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단,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 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신설〉 제69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	1. ----- ----- ----- ----- ----- -----제64조----- ----- -----120퍼센트----- ----- 2. ----- ----- -제64조----- ----- ----- 제67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문화재보호법 개정 내용 반영
--	---	--------------------------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의회 의원3인 2. (생략) 3. (생략)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1조(회의운영)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신설〉 〈신설〉	----- ----- -----이상이어야 하며,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 위원회 이하로 한다. 1. ----- 의원3명(소관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⑤----- -----하고, 3회까지 ----- ----- ----- 제71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국무조정실 공동주택 규제 개선방안
--	---	--

	<u>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3절 공동위원회 구성·운영</u>	
<u><신설></u>	<u>제81조의2(공동위원회의 기능)</u> <u>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채·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u>	
<u><신설></u>	<u>제81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u> <u>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u>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하 3. 제72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포함한다.	
<u><신설></u>	<u>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부터 제 77조까지의</u>	

【별표 3】(생략) 1. (생략) 2. (생략) 가. ~ 다. (생략) 〈신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신설〉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u>숙박시설</u> 및 동별표 제16호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생략) 가. ~ 자. (생략)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u>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u>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u>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u>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 ----- ----- -----<u>일반숙박시설</u>----- ----- ----- ----- ----- ----- ----- 2. (현행과 같음) 가. ~ 자. (현행과 같음)	• 주민불편 해소
--	---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u>70퍼센트</u> 이하인 것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u>숙박시설</u> 및 동별표 제16호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생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 ----- ----- ----- <u>90퍼센트</u> ----- ----- ----- <u>일반숙박시설</u> ----- ----- ----- ----- ----- 2.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u>70퍼센트</u> 이하인 것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u>숙박시설</u>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생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 ----- ----- ----- <u>90퍼센트</u> ----- ----- ----- ----- ----- <u>일반</u> <u>숙박시설</u>----- ----- ----- ----- ----- 2. (현행과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 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u>가공공</u>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4) (생략)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u>아파트 및 연립주</u> 택을 제외한다)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 반음식점(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u>나</u>목에 해당하는 것 라.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u>다</u>목에 해당하는 것 바. ~ 차. (생략) 〈신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마. ----- ----- ----- <u>가공공</u> 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u>첨단업종의</u> 공장 ----- ----- (1)~(4) (현행과 같음)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u>아파트를 제외한다</u>)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u>나목 및 사목</u>----- ----- 라. (현행과 같음) 마. ----- -----<u>다목부</u> 터 <u>마목까지</u>----- 바. ~ 차. (현행과 같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	• 「국 토 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	---

<u>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u> <u>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u>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u>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u> 다. ~ 마. (생략)	<u>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u> <u>타. (현행 카목과 같음)</u> <u>파. (현행 타목과 같음)</u>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u>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u> 다. ~ 마. (현행과 같음)	
--	--	--